



의안번호

제58호

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18. 8. 28.

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58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8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(제2회 추경)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『충남연구원』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충남연구원 개요】

- 연혁 : 1995년 도, 시·군 자본 100억원으로 설립(논산시 : 247백만원)
- 목적 : 도 및 시·군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책대안제시
- 위치 :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-26
- 원장 : 권영현(충남연구원 연구실장)-원장 공개채용중

□ 충남연구원 출연의 배경

-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담확대
- 저금리 시대에 따른 기금 이자 수입 감소
- ※ 2017년 200,000천원 출연 ⇒ 충청남도의 시·군 출연 요청

□ 도내 시·군 출연금 납부 현황

- 완료: 아산시, 당진시, 금산군, 청양군, 계룡시, 부여군, 천안시
서천군, 태안군, 홍성군, 공주시, 서산시(납부 순서)
- 예정(추경): 보령시, 예산군

□ 출연계획

- 출연금액: 50,000천원(2018년 2회 추경 편성 예정)
- 전략기획업무-시정 종합기획 수립-시정기획업무추진-출연금-출연금

□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

- 지역에 관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논산시 과제 수행 시 양질의 연구 수행 가능
 - 전략과제 연 1건, 현안과제 연 2건
 -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타당성 검토 연 4~6건

☞ 전략과제 및 현안 과제 수행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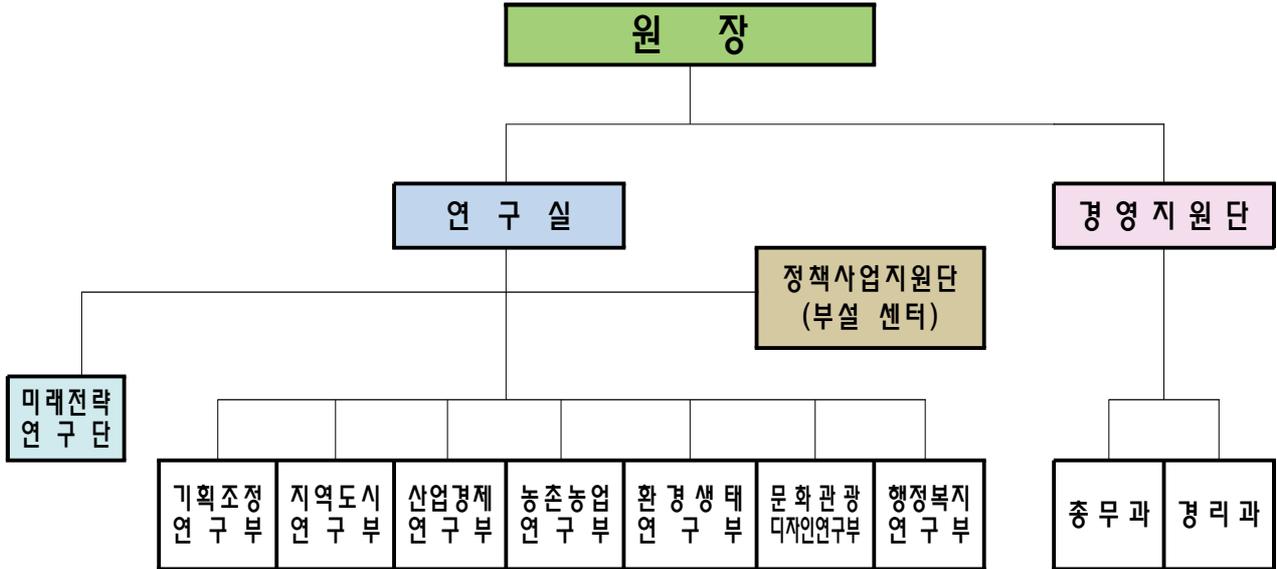
-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계획 추진계획 수립
- 논산시 제3기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(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, 강경 근대역사자원 활용 자립형 공동체 형성)
-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,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, 부적면 복합청사 신축, 강경젓갈축제 등 타당성 검토

□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

※ 참고 - 충남연구원 조직 현황

○ 1실, 3단·7부·2과, 8센터, 1팀



< 부설센터 >



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195호, 2016.5.29., 일부개정]

행정자치부(재정정책과), 02-2100-3515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- 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 - 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 - 3. 그 밖의 수입금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-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5.04.10.] [조례 제3976호, 2015.04.10., 전부개정]

정책기획관

제5조(기금)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 육성기금을 설치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육성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- 1. 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금
 - 2.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, 개인의 출연·기탁금과 양여·기부·기탁 받은 토지·건물 및 그 밖의 물품
 - 3.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

제6조(운영경비)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 - 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 - 3.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
 - 4. 보조금 등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7.3.30.] [법률 제14113호, 2016.3.29., 타법개정]

행정자치부(재정정책과), 02-2100-3506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“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 [전문개정 2011.8.4.] [제목개정 2014.5.28.]